

대통령령 제 호

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

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의6제1항제3호 중 “제2호”를 “제1호 또는 제2호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의6(공모 교장의 자격기준 등) ① 법 제29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학교유형별 공모 교장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·2. (생략) 3.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경우에는 <u>제2호</u> 와 동일한 경력을 갖춘 사람 ②·③ (생략)	제12조의6(공모 교장의 자격기준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. 1.·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-- <u>제1호 또는 제2호</u> ----- ----- ②·③ (현행과 같음)